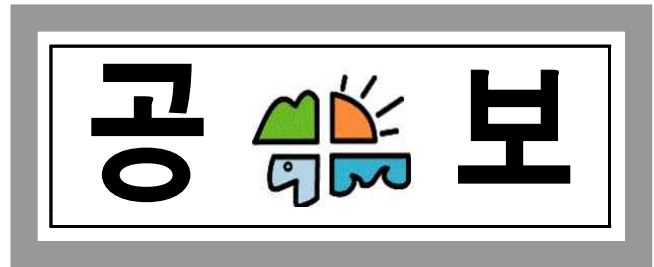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39호 2023년 1월 6일(금)

고 시

-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공 고

-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7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8
- 2023년도 속초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13

●속초시 고시 제2023-5호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속초시 고시 제 2020-154호(2020. 10. 23.)로 정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속초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56,229 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4, 302호(동명동, 대륙빌딩)
 - 대표자 : 정재우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4, 302호(동명동, 대륙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1.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용도
46,315.00	268,351.6210	25.22	372.85	130.15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8.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비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3,782	도로	4,314	속초중앙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귀속(전액부담)	
	공용 주차장	6,026	공원 (주차장)	4,500 (4,500)	속초중앙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귀속(전액부담)	공원 지하주차장 : 지하1층~지하2 층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규모는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 4층/지상41층, 10개동 1449세대

구분	전용면적(㎡)	형별	세대수	비고
임대	33.7626	33	81	
분양	59.9919	59	44	
	76.7065	76A	80	
	76.6342	76B	28	
	76.8646	76C	220	
	84.5022	84A	81	
	84.6469	84B	23	
	84.9996	84C	179	
	84.7202	84D	200	
	84.9172	84E	192	
	84.8418	84F	224	
	106.6290	106P	1	
	120.9408	120	72	
	136.0019	136	4	
	148.9681	148PA	3	
	148.5174	148PB	16	
	199.2400	199	1	

10.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1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제) 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4호선, 중로2-33호선, 중로3-64호선, 노외주차장 24 및 어린이공원 25)
 -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4호선, 중로2-33호선, 중로3-64호선, 노외주차장 24 및 어린이공원 25) 조성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시설 최초결정일
도 로	대로3-4호선	L=5,160m, B=25~31m	L=250m, B=25~31m	1976. 3. 27.(건고 제37호)
도 로	중로2-33호선	L=79m, B=15~20m	L=79m, B=15m	2012. 11. 26.(강고 제2012-367호)
도 로	중로3-64호선	L=145m, B=12m	L=145m, B=12m	2020. 10. 23.(속고 제2020-154호)
공 원 (주차장)	어린이공원 25 (노외주차장 24)	A=4,500㎡ (A=4,500㎡)	A=4,500㎡ (A=4,500㎡)	2020. 10. 23.(속고 제2020-154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위 3호와 같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위 6호와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위 8호와 같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1부.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우리 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따라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1. 제 목 :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6 ~ 2023. 1. 25. (19일간)
3. 게시장소 : 속초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각 동 게시판
4. 대 상 : 속초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및 신규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
5. 교육계획
 - 일 시 : 2023. 11. 15. (수) 09:30~16:30
 - 장 소 : 강릉 단오제전수교육관 1층 (강릉시 단오장길 1)
 - 교육시간 : 신규교육(6시간) 보수교육(3시간)
6. 교 육 비 : 신규 및 행정처분대상자(40,000원), 보수교육대상자(30,000원)
7. 교육내용 : 개정 법령 및 개정 조례 등
8. 문의처
 - 속초시 미래도시국 건축과 경관관리팀 (☎ 033-639-1517)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033-261-9210)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22년도분) 대상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 문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3. ~ 2023. 01. 17.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위반대상(위치)	처분내용	반송주소	송달불능 사유
문수*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941-1번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1동 1104호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22년도분) 처분 통보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 639-24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고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 3.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고 제2023-12호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2023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사 업 비 : 385백만원(시설보수비 315백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70백만원)

2. 지원대상

- 대상단지 : 총 155개 단지 / 30,285세대
 -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단지 : 시설보수비, 보안등 전기요금
 -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

구 분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합 계	155	30,285	31	8,397	124	21,888
아파트	93	28,352	23	8,030	70	20,322
연립주택	62	1,933	8	367	54	1,566

3. 지원기준

규 모(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 조례 별표 1에 따라 보안 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

* 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금액

4. 지원항목

-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경로당 유지보수
- 단지 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

-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비용의 보조 여부 결정
 -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단지 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 보수비용의 보조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설치비의 일부 지원 가능
 - 보안등 전기요금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금액 지급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 전년도 전기요금 월별금액의 합계 × 90%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서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한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W당 40.2원) × 12월 × 보안등 등수 × 90%
-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 내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 구입은 제외함
-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부분보수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함

6. 지원 제외대상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의 유사사업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의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7. 세부 추진일정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23. 1. 6.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3. 1. 11. ~ 2. 10.
- 현지조사 : '23. 2. 13. ~ 2. 24.
-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3. 3월 중
- 보조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3. 3월 중
- 사업 추진 및 정산 : '23. 3월 ~ 12월

8. 신청방법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 2023. 1. 11. ~ 2. 10.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 :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 :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명의로 신청
- 제출처 :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종합민원실 2층)
- 신청시 제출서류
 - 1) 시설보수비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포함)
 -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등)
 - 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 부담액
 -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2) 보안등 전기요금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단지 :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 : 단지 내 보안등 배치도

9. 관련 서식 및 안내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3-639-28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속초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 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 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속 초 시 장

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기 준
계	주민등록	조 례 외국인				
71,937	71,835	102	102	71,835	5,526 이상	총수의 1/13 이상

2.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71,070	10,661 이상	3개 이상	영랑동	3,993	599
			동명동	2,981	448
			금호동	5,372	711
			교 동	8,305	711
			노학동	18,506	711
			조양동	24,635	711
			청호동	4,416	663
			대포동	2,862	430

나. 시의원(지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20/100 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가선거구	27,929	5,586 이상	2개 이상	영랑동	3,993	280
				동명동	2,981	280
				금호동	5,372	280
				교 동	8,305	280
				청호동	4,416	280
				대포동	2,862	280
나선거구	43,141	8,629 이상	2개 모두	노학동	18,506	432
				조양동	24,635	432

3.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기 준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71,935	71,835	100	102	71,833	1,437 이상	총수의 1/50이상

4. 기타사항

위 공표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